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12. 15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: 2020년 11월 12일
- 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0년 11월 19일
- 라. 상정일자: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0. 12. 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권희자)

- 가. 제안이유
 - 「아동복지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 책무성 강화 및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아동학대 조사체계의 공공 중심 개편에 따른 구의 역할 확대 및 조문체계 정비
 - 조례명 개정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」
 - 별도의 정의 규정이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개정(안 제2조)
 - 구청장 책무에 따른 규정 구체화 및 정비(안 제4조)
 -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, 조례

에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해당 내용 삭제(안 제5조)

○ 조문 체계화 및 정비(안 제7조)

○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올바른 띄어쓰기, 명칭의 통일,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리 등 자구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선영)

○ 본 안건은 「아동복지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 책무성 강화 및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주요내용은

- 조례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
- 안 제2조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및 개정하였으며
-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구청장 책무에 따른 규정을 구체화 및 정비함
- 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은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
- 안 제7조에서는 조문의 체계화 및 정비하였으며
- 그 밖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의 개정사항 반영과 구의 책무성 강화 및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,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지침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9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11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아동복지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 책무성 강화 및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학대 조사체계의 공공 중심 개편에 따른 구의 역할 확대 및 조문체계 정비
- 나. 조례명 개정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」
- 다. 별도의 정의 규정이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개정(안 제2조)
- 라. 구청장 책무에 따른 규정 구체화 및 정비(안 제4조제2항)
- 마.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,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해당 내용 삭제(안 제5조 제1~3항)
- 바. 조문 체계화 및 정비(안 제7조)
- 사.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올바른 띄어쓰기, 명칭의 통일,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리 등 자구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나. 협의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2) 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- 3) 예산수반사항: 해당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- 5) 행정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0. 10. 22. ~ 11. 8. / 17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”를 “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하여”로, “규정함”을 “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2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(이하 “아동학대예방 등”이라 한다)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

야 한다.

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2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· 조사
3.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3.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한다.

1.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」 제

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 중 “아동학대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”를 “아동학대예방 등에”로 한다.

제9조의2 중 “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”를 “아동보호전문기관,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”로, “교육을”을 “교육 및 홍보를”로 한다.

제9조의3을 삭제한다.

제11조 중 “아동학대 예방”을 “아동학대예방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아동학대 예방”을 “아동학대예방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”를 “조례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<u>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 2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 3. “아동학대”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	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하여</u> ----- ----- ----- <u>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</u>--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 2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.

강 ·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· 정신적 ·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.

4.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이란 아동복지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 ·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 아동 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, 보호,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 · 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(이하 “아동학대예방 등”이라 한다)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
2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· 조사

3.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아동학대 신고의무) ① 누

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
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
한 특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
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
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
관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
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
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
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
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
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
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
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
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
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

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,
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
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
등포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(이하
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
영한다.

②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영등
포구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

<삭 제>

제6조(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등)

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
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(이하
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
·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정
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

운영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
2.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에 관한 사항

3.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. 이 경우 서울특별

제8조(시행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정책
2.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3.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
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의2(교육)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시 영등포구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
<삭 제>

제9조(예산지원) ----- 아동학대 예방 등에 -----
-----.

제9조의2(교육) ----- 아동보호전문기관,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-----
----- 교육 및 홍보를 -----.

<u>제9조의3(홍보)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, 캠페인,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제11조(관련정보의 제공) 구청장은 <u>아동학대 예방</u>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11조(관련정보의 제공) ----- -- <u>아동학대예방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2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<u>아동학대 예방</u>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12조(비밀 준수의 의무) ----- ----- <u>아동학대예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3조(시행규칙) 이 <u>조례에서</u>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3조(시행규칙) -- <u>조례</u>----- ----- -----.